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

1. 관련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83호(2022.12.21.) "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"
2. 위 호와 관련,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) 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) '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(ECMO)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'에서 **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(생후 28일 이내)를 포함**하며, 이 경우 소아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하는 실시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(참고)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83호 중 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
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	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	'신생아 초과 소아'에게 투여하는 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 가. <생략> 나. 실시기준 1) <생략> 2) 상기 가2) 급성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가)~다)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)~나) <생략> 다) 6세 이하의 소아 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(ECMO)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3) <이하 생략>

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. 1. 4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81 (2023. 1. 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